



## 교육감 규정

번호: A-411

제목: 행동 위기에 처한 학생 지원

항목: 학생

발행: 2024년 7월 25일

### 변경 사항 요약:

본 규정은 2015년 5월 21일 자 A-411를 대체합니다.

본 규정 전반에 걸쳐 명확한 내용 전달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순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911 연락 대신 학생 지원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본 규정의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섹션 I

- 개요가 추가되었습니다.
- 본 규정은 학생들이 행동 위기를 겪을 때의 예방, 중재 및 완화와 관한 교육청 정책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I.A.)
- 위기 중재의 목표는 행동 완화를 도와 위기나 위험에 처한 학생을 지원하는 것임을 추가합니다. (I.B.)
- 학교는 반드시 본 규정과 학교의 위기 중재 계획에 따라 행동 위기를 겪는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고 안전한 모든 완화 기술과 중재를 사용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I.C.)
-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학부모, 학교 직원 및 비-교육청 관계자의 용어를 정의합니다. (I.D., I.E.)
- 위기 지원 리소스에 링크를 추가합니다 (I.F.)
-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완화 기술은 신체적 중재 또는 언어적 위협을 포함하지 않는 트라우마를 고려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전략 및 중재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I.G.)

#### 섹션 II

- 학교 위기 중재 팀의 구성과 책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II.B., II.C., II.D.)
- 위기 팀 리더의 자리는 반드시 풀타임 기준이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II.C.)
- 위기 중재 팀이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준비 상황을 평가하고 절차, 자원 및 훈련을 검토하며, 위기에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꾸준한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II.E.)

- 위기 중재 팀의 추가 책임에 대하여 [교육감 규정 A-755](#) 교차 참조 (II.F.)

### 섹션 III

- 위기 중재 계획은 행동 위기 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섹션 및 위기 중재 계획의 기타 섹션들의 상세 내용에 대한 [교육감 규정 A-755](#) 교차 참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III.A.)
- 위기 중재 계획은 위기 상황을 최소화하고 행동 위기를 완화하도록 고안된 행동 관리 전략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추가합니다. (III.A.1.)
- 행동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고립에 대한 언어 표현을 삭제합니다. (III.A.3.)

### 섹션 IV

- 뉴욕주 규정에 따른 규제 및 기타 중재 제한에 관한 섹션을 추가합니다. (IV.)
-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직원 및 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에 대하여 체벌, 혐오 유발 중재, 기계적 구속 또는 격리를 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IV.A.)
- 체벌, 혐오 유발 중재, 기계적 구속 및 격리를 정의합니다. (IV.A.1-4.)
- 학교 직원이 신체적 규제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교육청 관계자가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는 한 신체적 규제를 가할 수 없으며 덜 제한적이고 적대적인 중재 및 완화 기술로는 다른 학생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입힐 만한 긴급한 상황을 방지할 수 없고 뉴욕주 규정에서 이를 사용하는데 대해 알려진 의학적 금지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IV.B.)

### 섹션 V

- 본 규정 및 학교의 행동 위기 완화 계획에 명시된 정책과 절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모든 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 오리엔테이션이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V.A.)
- 위기 중재 팀 멤버는 반드시 학생의 웰빙 및 행동 위기 예방과 완화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기 관련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V.D.)

### 섹션 VI

- 학교 위기 중재 계획에 설명된 완화 전략 및 중재를 사용할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VI.A.)
- 학생이 행동 위기를 겪고 학급 교사가 이를 안전하게 완화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학급 교사, 학교장/대리인 및 학교 위기 팀 멤버가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를 추가합니다. (VI.B-F.)
- 학교장/대리인이 반드시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하며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비상 연락 카드에 지정된 학생의 비상연락처에 알린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VI.D.)
- 행동 위기가 성공적으로 완화되었을 때 학생의 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학생은 즉시 교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VI.F.)

- 행동 위기에 대응하여 911 을 부르기 전에 반드시 기울여야 하는 노력에 대한 요건과 911 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학교장/대리인의 결정의 요건을 명시합니다. (VI.G.)
-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911 연락을 학생의 행동에 대한 징계 대응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전략과 리소스들과 같은 완화 전략에 대한 대체 전략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VI.H.)
- 학교 직원들이 911 또는 EMS 에 연락하겠다고 위협하여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서 데리고 가도록 지시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VI.I.)

#### 섹션 VII

- 911 을 부를 경우 반드시 학교장/대리인은 즉시 이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며,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학생의 비상연락처에 알려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합니다. (VII.A.)
- 행동 위기를 안전하게 완화하지 못하고 응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학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고 911 을 부른 경우 준수해야 할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VII.D.)
- 학생에게 응급 처치 및/또는 이송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행동이 완화된 경우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는 즉각적인 적절한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VII.E.)
- 학교 직원들이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서 데리고 가도록 지시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VII.E.)

#### 섹션 VIII

- 학생은 반드시 계속해서 적절한 지도를 받아야 하며, 학교에 재학하거나 학교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정신 건강 진단서 또는 기타 요건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VIII.A.)
- 행동 위기 이후에 취해야 할 조치 및 학생 대상으로 가능한 중재 목록을 명확히 합니다. (VIII.B.)

#### 섹션 IX

- 행동 위기에 따른 보고 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IX.A-D.)

#### 섹션 X

- 문의처에 관한 연락 정보를 갱신합니다.

번호: A-411

제목: 행동 위기에 처한 학생 지원

항목: 학생

발행: 2024년 7월 25일

## 요약

본 규정은 2015년 5월 15일자 규정 A-411을 대체합니다. 모든 적절한 완화 중재가 시도되지 않는 한 911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행동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갱신합니다.

### I. 개요 <sup>1</sup>

- A. 본 규정은 행동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예방, 중재 및 완화에 관한 교육청("DOE")의 정책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 B. 위기 중재의 목표는 해당 행동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것을 도와 위기나 위험에 처한 학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다른 학생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만한 행동에 가담하고 교육 과정을 현저하게 방해할 때 학교에서는 반드시 해당 행동을 규제할 만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고 문제의 상황을 학교 직원이 다음과 같이 안전하게 완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C. 본 규정과 학교의 위기 완화 계획에 따른 위기 완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만한 행동에 지속적으로 가담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911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D.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라는 용어는 학생의 부모(들), 보호자 또는 학생과 부모 관계나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학부모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도록 지명한 사람(loco parentis) 또는 [교육감 규정 A-101](#)에 따라 명시된 기타 의미를 뜻합니다.
- E.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교 직원이라는 용어는 비-교육청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구성원을 포함하며 학교 안전 요원(SSA) 또는 NYPD 관계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 학교 기반 클리닉 또는 정신 보건 클리닉 및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배치된 학교 안전 요원을 말합니다.

---

<sup>1</sup> 신체 부상 또는 의료상황으로 응급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여 911에 연락하는 규정 및 절차는 [교육감 규정 A-412](#)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F. 리소스는 [위기 지원\(nyced.org\)](http://nyced.org)을 참고하십시오.
- G.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완화 기술은 신체적 중재 또는 언어적 위협을 포함하지 않는 트라우마를 고려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전략 및 중재여야 합니다.

## II. 학교 위기 팀

- A.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신속하고 통합된 조치, 명확한 의사소통 라인 및 당사자의 새로운 감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합니다.
- B. 모든 학교 학교장은 반드시 학교 위기 중재 팀을 설립해야 합니다 (“위기 팀”) 위기 팀은 다분야 팀입니다. 팀 구성원은 반드시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하며, 학교에 이러한 직책에 담당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최소한 학교 행정직원, 학교 카운슬러(들) 및/또는 사회 복지사(들), 교사(들), 약물 남용 예방 및 중재 스페셜리스트(들)(Substance Abuse Preventions and Intervention Specialist: SAPIS), 학교 간호사(들) 및/또는 학교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School Based Mental Health Providers: SBMHP)를 포함해야 합니다.
- C. 위기 팀에는 반드시 위기 팀 리더 및 통합 학교 및 청소년 발달 계획에 명시된 기타 직책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위기 팀 리더 이외의 여러 직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기 팀 구성원이 학교를 떠나거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대체 구성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 D. 위기 팀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 도중 및 이후에 학생, 직원 및 학교 커뮤니티의 정서적 요구 사항 평가 및 해결하기, 해당 위기에 영향 받은 당사자들을 위한 지원 및 중재하기, 완화 지원 제공하기, 학습 환경 복원 촉진하기, 학생, 직원, 학부모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커뮤니티 리소스 확인하기 (예: 병원, 이동 위기 팀, 정신 건강 기관, 커뮤니티 기반 단체 (CBO), 학교 기반 정신건강 클리닉, 위기 완화 훈련을 받은 관계자, 긴급/당일 정신 건강 평가 제공이 가능한 시설), 예방 전략 개발 및 시행하기, 전문성 개발 촉진 및 제공하기.
- E. 위기 팀은 준비 상황을 평가하고 절차, 자원 및 훈련을 검토하며, 위기에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꾸준한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하기 위해 매월 1 회 이상 및 필요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의의 주제와 참석자는 반드시 파일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 F. 위기 팀의 기타 책임은 [교육감 규정 A-75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III. 위기 중재 계획

A. 각 학교의 위기 팀은 반드시 해당 학교의 학교 및 청소년 종합 발달 계획의 일환으로서 행동 위기 완화 계획을 설명하는 섹션이 포함된 위기 중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참조: [교육감 규정 A-755](#) 에서 위기 중재 계획에 포함될 다른 섹션에 대한 설명을 알아보십시오. 행동 위기 완화 계획 섹션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위기 상황을 최소화하고 행동 위기를 완화하도록 고안된 행동 관리 전략을 포함합니다.
2.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학교 건물 내의 장소를 지정합니다.
3. 완화 전략을 훈련 받은 학교 직원을 지정합니다.
4. 이용 가능한 교내 및 커뮤니티의 리소스 및 서비스를 파악합니다(예, 정신건강 클리닉, 이동 위기 팀, 핫라인, 응급/당일 정신건강 평가 제공 가능한 시설 등).
5. 위기 완화 및 대응 프로토콜이 학교 직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설명합니다.

### IV. 규제 및 기타 중재 제한

A.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직원 및 비-교육청 관계자는 아래 정의된 체벌, 혐오 유발 중재, 기계적 구속 또는 격리를 학생에게 행할 수 없습니다.

1. 체벌 (참조: [교육감 규정 A-420](#)).
2. 혐오 유발 중재란 학생이 어떤 행동을 그만두도록 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이나 불편함을 가져오는 중재를 의미하며, 유해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또는 강제적인 스프레이, 흡입제 또는 맛을 사용하거나 또는 유해하고 고통스러우며 강제적인 자극 또는 활동 또는 조건부 식품 프로그램의 조건부 적용(예, 식사 제한이나 지연 또는 혐오스러운 음식 또는 음료로 변경)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 기계적 구속이란 학생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장치를 의미하지만 적응 장치 또는 기계 지원, 차량 안전 장치, 의료 목적의 안전 장치 또는 정형외과에게 처방된 장치와 같이 적절한 의료 또는 관련 서비스 전문가가 처방한 장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격리란 학생이 방이나 어떤 공간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 비자발적 구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a) 격리는 타임 어웨이 또는 타임아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1) 타임아웃이란 잠겨 있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는 환경에 학생을 분리하여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완화 및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타임아웃은 덜 제한적인 중재로 다른 학생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해가 있을 만한 긴박한 상황을 방지할 수 없고 이 방법의 사용에 대해 알려진 의학적 금지 사항이 없으며 직원이 이를 사용하는 데 대한 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타임아웃은 안에서 열리는 안전하고 열려 있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각적, 청각적으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에게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 (3) 타임아웃은 학생이 안전하게 완화되고, 통제력을 회복하여,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되는 즉시 반드시 종료되어야 합니다.
- (4) 격리 또는 타임아웃은 학생 주도 또는 학생 요청의 휴식 시간 또는 대응 장치나 활동 관련 사항이 포함된 교실이나 공간 사용 또는 장애 학생의 행동 중재 계획과 동일한 중재의 사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B.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직원은 신체적 규제를 가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교육청 직원은 신체적 규제 사용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체적 규제를 가할 수 없으며, 오직 다음의 경우에만 신체적 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덜 제한적이고 덜 강압적인 중재 및 완화 기술로는 다른 학생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입힐 만한 긴박한 상황을 방지하지 못하며 이 방법을 학생에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 금지 사항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체적 규제란 학생이 팔다리, 머리,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거나 움직임을 감소시키는 일신상의 규제를 의미하며,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며 학생을 진정시키고 또는 기술을 가르쳐주며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신체적 호위 또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유아원 학생에게는 신체적 규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 본 규정의 섹션 IX에 명시된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C. 위기 중재 계획 및 본 규정에 따라 위기 상황이 해결될 수 없고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반드시 학교장/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직원은 학교장/대리인에게 연락하기 전에 학교 안전 요원(SSA)과 같은 비-학교 직원에게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을 제지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 V. 학교 직원 전문성 개발

- A. 교육청은 반드시 매년 10 월 31 일까지 비-교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반드시 본 규정 및 학교의 행동 위기 완화 계획에 명시된 규정 및 절차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B. 매 학년도 10 월 31 일까지 본 규정 및 행동 위기 완화 계획에 명시된 정책 및 절차에 대해 학교 안전 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발표되어야 합니다.
- C. 각 학교에서는 반드시 매년 10 월 31 일까지 이와 같은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음을 해당 학교의 연례 학교 및 청소년 종합 발달 계획에 인증해야 합니다.
- D. 위기 팀 구성원은 반드시 학생의 웰빙 및 행동 위기 예방과 완화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기 관련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해야 합니다. 참조: 교육감 규정 A-755 에서 위기 팀 멤버 대상 추가 훈련 주제를 알아보십시오. 또한 위기 팀 리더는 반드시 위기 팀 리더십의 연례 훈련에 참가해야 합니다.

## VI. 행동 위기 상황 대응

- A.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실 내 교사 및 기타 학교 직원은 반드시 학교 위기 완화 계획에 기술된 행동 위기 대처 전략과 중재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안전하게 행동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B. 학급 교사/직원이 안전하게 행동을 완화할 수 없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에게 반드시 해당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 C. 학교장/대리인은 위기 완화 훈련을 받은 관계자 및/또는 학교 직원(예: 위기 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D. 그와 동시에 학교장/대리인은 학생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학부모에게 (전화 또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문자, 이메일 또는 음성메시지로)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감 규정 A-663 에서 학부모와 소통 시 통역 서비스에 대해 참고하십시오.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비상 연락 카드에 지정된 비상 연락처에게 이를 알리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1. 학부모는 안전이 허락되고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자녀와 전화 또는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 E. 또한 학교장/대리인은 학생이 신뢰하는 관계의 학교 직원, 학교 카운슬러 또는 학교 기반 정신건강 클리닉(SBMHC)의 직원과 같은 다른 적절한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은 또한 학교 현장, 학교 CBO 또는 학생 이동 위기 팀(Children's Mobile Crisis Team)에 정신 건강 서비스 포함의 학교 기반 보건 센터(SBHC)가 있는 경우 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F. 위기가 완화된 경우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건을 알려야 합니다. 해당 학생은 즉시 수업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 G. 위기가 완화되지 않아 학교 직원이나 위에 명시된 지원 서비스에 의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없고, 학생의 행동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을 만한 긴급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학교장/대리인은 추가적인 노력을 시도해야 하는지 여부 및/또는 응급 지원을 위해 911에 연락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911은 학교장/대리인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H. 어떤 경우에도 911 신고가 학생의 행동에 대한 징계 조치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911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과 자원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락하지 않으며 완화 전략이나 자원을 대체하거나 그 대안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I. 학교 직원은 911이나 EMS(Emergency Medical)에 연락하겠다는 위협을 하여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서 데리고 가도록 지시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 없습니다.

## VII. 911에 연락이 취해졌을 때 학교의 의무

- A. 학생의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911에 연락할 경우 반드시 학교장/대리인은 즉시 학부모에게 911 연락을 하였음을 알려야 합니다.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생의 비상 연락처로 해당 사실을 알리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1. 학부모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현장의 911 대원의 활동에 부당한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현장 911 대원 및 학생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2. 만약 학부모가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고 전화로만 연락이 된 상태라면, 현장의 911 대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학부모에게 반드시 현장의 911 대원들 및 해당 학생과 전화로 대화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 B. 만약 학부모가 자녀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 현장의 911 대원들은 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및 기타 담당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학부모의 요청이 뉴욕시 소방청(FDNY)의 의료 지원 거절(Refusal of

Medical Assistance)에 관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락할 수 있는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C. 학교장/대리인이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하지 못한 경우 현장의 911 대원들은 (i) 학교 직원 및 기타 담당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ii) 학생에게 응급 의료 처치 및/또는 이송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학교 직원이 반드시 학생과 동행해야 합니다. 학생과 병원까지 동행한 교직원의 근무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학생의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직원은 반드시 학교장/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D. 학생에게 응급 처치 및/또는 이송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행동이 완화된 경우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는 즉시 적절한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학교 직원들이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서 데리고 가도록 지시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 없습니다.

#### VIII. 후속 조치

A. 해당 학생은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에 복귀하거나 다닐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정신건강 진단서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B. 위기 팀과 관련되었고/또는 911 신고가 있었던 행동 위기가 발생한 후, 학교 직원은 반드시 학부모(및 적절한 경우 학생)와 만나 학생을 위한 적절하고 긍정적인 행동 지원 및 중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재에는 가이던스 카운슬링, 외부 정신 건강 지원 의뢰, 특수 교육 평가 의뢰, IEP 학생 대상 기능 행동 평가 의뢰, 학생 및 학부모와의 행동 계획 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IX. 보고 절차

A. 학교장/대리인은 911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의 응급 접수 센터(EIC)에 전화 (718)935-3210 번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B. 신체적 규제 및/또는 타임아웃이 완화의 일환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사건 발생 리포트 사본을 삼(3) 수업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C. 온라인 사건 발생 리포트

1. 학교장/대리인은 911 에 신고했을 때의 모든 사건들을 포함하여 위기 완화 프로토콜이 사용된 모든 사례에 대해 수업일 하루 이내에 온라인 사건 발생 리포트(OORS Report)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 911 에 신고한 경우 완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신고가 진행되었으며 신고가 필요한 긴급한 위험 상황에 있었음을 OORS 리포트에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 요청 시 본 규정의 사본은 반드시 학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교육감 규정 A-820 및 가정 교육 권리 및 비밀보호법(FERPA)에 의거하여 자녀의 사건 발생 리포트 사본을 요청하고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X. 문의

본 규정에 관한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Office of Safety and Youth Develop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218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74-5501

팩스: 212-374-5751

이메일: [Crisissupport@schools.nyc.gov](mailto:Crisissupport@schools.nyc.gov)